

仲裁研究, 第 15 卷 第 2 號
2005년 8월 1일 발행, pp.61-91

논문접수일 2005. 6. 2
제재확정일 2005. 7. 18

상사분쟁 해결촉진을 위한 한-중 중재기관간 협력의 과제*

Cooperation for Development of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Arbitral Institutions

김 상 호** Sang-Ho Kim

〈목 차〉

- I. 서 론
- II. 상사분쟁 해결촉진을 위한 한-중 협력현황
- III. 서울-청도간 분쟁해결 촉진을 위한 협력의 과제
- IV. 동북아 공동중재기구 창설의 과제-NAFTA가 주는 시사점
- V. 결 어

주제어 : 분쟁해결 상호협력,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 한·중 중재기관

* 이 논문은 한국중재학회가 2005년 4월 22일 중국 청도시(청도대학 국제교류중심)에서 한-중 양국의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중 국제중재심포지움」에서 발표한 것으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I. 서 론

국가간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주요 문제중의 하나로 등장하는 것은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적(私的) 상사분쟁의 공정·신속한 해결이다. 이는 역내간 또는 특정 국가간의 경제교류가 무역, 투자관련협정 및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로 결속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경제적 장벽이 무너지는 한편으로 물품, 서비스 및 자본의 거래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국제간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적 상사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무역, 투자 등 국제경제교류의 촉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이해 당사국간에 체결되어 있는 무역 및 투자 관련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의 메커니즘, 해당국가 중재기관간에 체결되어 있는 중재협정 및 이들 분쟁의 해결을 위해 체결된 국제협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업의 분쟁해결 실무에 대처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따른 상사분쟁의 해결 촉진을 위해 양국간에 체결된 조약 및 중재협정상의 분쟁해결노력에 대해 고찰하고 분쟁해결상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중 간 상사 분쟁 해결의 촉진을 위해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중국 산동성 청도지역의 중재기관과 대한상사중재원이 협력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

II. 상사분쟁 해결촉진을 위한 한-중 협력현황

1. 개요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24일 양국 수교이후 산업구조의 상호 보

완성, 지리적 근접성 및 문화적 유사성 등을 바탕으로 양국간에는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며 이제는 전면적인 경제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양국간 경제교류가 시작된 1979년 무역총액은 1,900만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100억달러가 넘었고 2004년에는 790억달러에 달하였다. 특히 2002년부터는 홍콩을 포함한 대중국 수출 비중이 대미수출을 초과(2002년의 경우 전체 수출중 중국·홍콩은 20.9%, 미국은 20.1%) 함으로써 중국은 이제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교역국으로부상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 이후 중국은 투자실적 기준으로 미국을 앞서 최대의 투자대상국이 되고 있다.

한-중간 무역, 투자 등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적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양국간에 체결된 무역협정¹⁾에서는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무적 차원의 분쟁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의 중재기관은 중재협정을 체결하였다. 한-중 양국은 수교직전 양국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보장협정²⁾도 체결하였는데 동 협정에서도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정부차원의 협력

(1) 무역협정

한-중 무역협정에서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상사분쟁 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³⁾ 먼저 양국의 거래당사자간에 상사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우호적인 협의로 해결하는 것을 장려한다. 그러나 분쟁을 당사자간

1) 우리나라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중국의 중국국제상회간에 체결되어 1992년 2월 1일자로 발효중인 한-중 무역협정은 동년 8월 양국 수교이후 조약으로 격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1992년 7월 26일 발효된 한-중 투자보장협정의 당사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중국국제상회이다. 이 협정도 양국 수교이후 조약으로 격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한-중 무역협정 제6조.

의 우호적인 협의에 의해 해결할 수 없으면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중재약정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중재의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양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며 한-중 양국은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협정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중재前 분쟁해결 수단으로는 ‘우호적 협상과 조정’을 들 수 있다. 이는 분쟁의 처리에 있어서 우호협상이나 타협을 중시하여온 중국의 관습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⁴⁾ 중재합의의 방식으로는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당사자간에 별도로 중재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과 중국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위해 가입하고 있는 뉴욕협약에서는,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에 의해 현존분쟁과 장래분쟁 모두 중재에 부탁할 수 있다. 여기서 ‘서면합의’란 계약서상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간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⁵⁾

한-중 무역협정에서는 양국 상거래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양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도록 장려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발생시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과 중국의 중재기관, 예컨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 CIETAC)나 청도중재위원회(Qingdao Arbitration Commission : QAC)에서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양국 정부의 의도이다.

무역협정에서 한-중 양국은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것은 중재판정의 집행을 보장키

4) 1979년 중국이 미국과 체결한 미-중 무역협정에서도 “through friendly consultation, conciliation or other mutually acceptable means”라고 규정함으로써 중재 전 분쟁해결 수단으로 우호적 협상이나 조정을 중시하고 있다(제8조 제1항).

5) 뉴욕협약 제2조 제2항.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과 중국 CIETAC의 중재규칙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위한 양국 정부의 국가적 의무를 선언하는 동시에 양국의 거래 당사자들이 마음 놓고 상거래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의 거래당사자들은 중재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한-중 무역협정상의 규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거나 아니면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투자보장협정

한-중 투자보장협정에 따른 투자분쟁의 당사자는 일방국가의 투자자와 타방 국가의 정부이다.⁶⁾ 따라서 협정 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간의 투자관련 분쟁은 투자보장협정상의 분쟁해결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통상의 상사중재나 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투자분쟁의 당사자로서 ‘정부’에는 중앙정부의 기관뿐만 아니라 하부기관도 포함된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대외경제무역부 산하의 하부행정기관 또는 성·자치주·직할시·경제특구 등의 행정기관도 포함될 것이다.

한-중 투자보장협정 제10조 제1항에서는 투자분쟁에 관하여 “투자와 관련한 일방국가의 투자자와 타방국가의 정부간의 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중국은 ICSID협약⁷⁾을 비준하면서 가입조건으로 국유화나 수용에 따른 보상관련 분쟁에 한해서 ICSID의 중재에 회부하겠다고 통고하였다. 따라서 국유화나 수용에 따른 보상관련 분쟁을 제외한 모든 투자관련 분쟁은 그 최종해결을 위해 한국이나 중국의 중재기관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6) 한-중 투자보장협정 제10조 제1항.

7) ICSID협약을 워싱턴협약(Washington Convention)이라고도 한다. 세계은행 주도로 1965년 3월 18일 미국의 워싱턴에서 채택되었고 1966년 10월 18일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투자분쟁에 관한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구가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투자분쟁국제해결본부)이다.

3. 중재기관간 중재협정

한-중 양국의 중재기관은 1992년 12월 15일 북경에서 무역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사중재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의 한국측 당사자는 대한상사중재원이고 중국측 당사자는 CIETAC이다.

협정의 주요내용은 양국간의 무역에 종사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협정에서 권고하는 중재조항을 자신들의 상거래계약서에 삽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간에 중재합의가 안되면 중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중 상사중재협정에서 권고하는 중재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arising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out of, relating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pursua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The arbitration award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contracting parties.'(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간의 중재협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계약의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이 협정에서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으면 중재지 결정에 있어 피신청인주의를 채택한다는 것도 합의하였다. 예컨대 분쟁이 발생되었고 분쟁해결기관에 대해 당사자간에 약정이 따로 없으면 중재신청인이 한국인이라면 중국측 중재기관에 의해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중국측이 중재신청인이라면 중재사건은 피신청인측인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다루어진다.

III. 서울-청도간 분쟁해결 촉진을 위한 협력의 과제

1. 협력의 필요성

이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따라서 한-중 경제교류에서 발생하는 무역, 투자분쟁 등 상사분쟁을 현재 보다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 중재기관간 협력이 보다 긴밀하게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은 CIETAC와만 중재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앞으로 청도중재위원회와도 중재협정 체결과 함께 분쟁해결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청도시가 소재하고 있는 산동성과 한국과의 경제교류 현황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산동성은 중국 2위의 인구(9,128만명, 1위는 하남성)와 3위의 GDP(약 1,872억불, 1위는 광동성, 2위는 강소성)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며, 2004년 GDP 성장률이 15.3%에 이르는 등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이다. 산동성은 또한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가장 밀접할 뿐만 아니라 특히 무역, 투자 등 경제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투자면에서 우리나라 대중국 투자의 약 절반이 산동성에 집중되어 있다. 2004년 한국과의 교역액은 126.2억달러에 이르러 광동성, 강소성 다음의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증가율도 30% 이상에 이르고 있다. 진출업체 수도 12,800여개로서 중국내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 한국인 체류자 수도 7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⁸⁾

8) 주 청도 총영사관 홈페이지 자료.

2. 중재조항 이용확대 및 중재협정 내용의 다양성 필요

한국과 중국(특히 청도를 포함한 산동성 지역)의 거래 당사자들이 분쟁해결 촉진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청도중재위원회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중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중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과 청도중재위원회는 거래당사자들이 계약체결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중재조항의 내용을 다양화하여 한-중 거래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각각 자기측 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원 혹은 청도중재위원회)이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을 이용하도록 양국의 거래당사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둘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나라의 중재기관을 이용하기로 하는 경우의 중재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한-중 거래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재지, 중재기관 등에 관하여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계약자체가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즉, 어떤 회사는 청도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할 것을 고집하고 또 어떤 회사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하기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청도중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중재조항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중재조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⁹⁾

■ 피신청인 국가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

All disputes related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 In case the respondent is (a Korean

9) 대한상사중재원, 『상사분쟁과 중재절차 해설』, 2001.12, p.12.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case the respondent is (a Chinese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Qingdao Arbitration Commission of China.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피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한국기업)일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만일 피신청인이 (중국기업)일 경우 청도중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 신청인 국가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

All disputes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the claimant. In case the claimant is (a Korean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case the claimant is (a Chinese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Qingdao Arbitration Commission of China.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만일 신청인이 (한국기업)일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만일 신청인이 (중국기업)일 경우 청도중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3. 새로운 협력모델의 도입

(1) 개요

국제간의 개방화가 촉진됨에 따라 국제간의 상거래도 촉진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국제상거래상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함에 있어 중재자가 분쟁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주된 관심사항임은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다.

이와 함께 상사중재의 실무에서 볼 때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의 지위에 있는 중재인의 공정성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상설중재기관은 중재판정부 구성을 위해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인 명부(panel of arbitrators)를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중재협정을 통해 중재판정부 구

성에 상호 협조하는 것도 분쟁해결의 촉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A국의 중재기관에 등록된 중재사건의 중재지가 B국으로 되어있는 경우 B국의 중재기관이 해당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을 추천하는 경우이다. 이와 함께 B국의 중재기관은 동 중재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심리를 개최할 장소를 제공하거나 속기나 통역 등 중재절차 진행상의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상거래가 복잡·대규모화되고 세계화가 촉진되면서 그에 비례하여 분쟁해결의 국제적 협력이 긴요하게 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이 체결한 대표적인 것으로 한-ICC 및 한-오스트리아 업무협약정이 있다.

(2) 한-ICC 업무협약정

이 약정은 중재시설제공 및 중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ICC(국제상업회의소)측과 1978년에 체결하였다.

한-ICC 약정의 당사자는 4개 기관이다. 즉,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 Court of Arbitration) 및 국제상업회의소 한국 국내위원회(ICC Korean National Committee)이다. 이 중 협정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당사자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이다.

한-ICC 약정의 특징은 종래의 중재협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재관련 정보나 자료교환의 차원을 넘어,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세미나와 회의를 공동으로 조직하여 개최하며 ICC 중재사건의 진행에 대한 상사중재원이 중재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이 ICC 중재법원의 중재업무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로서, ① ICC 중재법원의 요청에 따라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을 추천하며¹⁰⁾, ② 중재지가 서울로 된 경우 중재심리는

10) 한·ICC 중재협정 제5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실에서 열리며 대한상사중재원은 ICC 중재인에게 그 자신의 중재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중재관리상의 지원(속기, 통역 등)을 하도록 하였다.¹¹⁾

국제상사중재에서 세계적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ICC 중재법원과의 중재협정이 시사해 주는 바는 크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국제상사 중재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 나라의 경우 ICC와의 중재협력의 강화는 선진 중재제도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WTO 및 OECD가입 이후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과 상사분쟁의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ICC 약정과 유사한 형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아·아법률자문위원회(AALCC)¹²⁾ 산하의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및 카이로지역 국제상사중재센터와 체결한 업무협조약정에서도 발견된다. 이들 약정에서는 중재판정의 집행, 특히 동 중재센터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주관 하에 중재절차가 진행되어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의 중재판정집행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체결한 중재협정의 당사자 중 ICC 중재법원과 AALCC 산하의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및 카이로지역 국제상사중재센터는 특정국가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전형적인 무국적의 국제중재 기관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3) 한-오스트리아 업무협조약정

1) 체결의 배경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UN차원에서 제정한 UNCITRAL 중재규칙이 최초로 언급된 중재협정은 1977년 미국중재협회와 소련연방상공회의소간에 체결된 「미-소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Optional Arbitration Clause for Use in

11) 한·ICC 중재협정 제6조.

12) AALCC는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의 영문명칭인 The 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Committee의 약칭이다.

Contracts in USA-USSR Trade)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1984년 미국중재협회와 형가리상업회의소간에 체결된 같은 명칭의 중재협정에서도 중재절차에 관하여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러 투자보장협정 제9조 제4항에서도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분쟁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³⁾ 따라서 UN국제무역법위원회가 채택한 UNCITRAL 중재규칙은 그간 동서국가간의 중재에 널리 이용되어 왔다.

UNCITRAL 중재규칙은 범세계적 보편화를 위해 국제연합 차원에서 노력한 결실의 산물이다. 이를 위해 동 규칙의 초안 작업시 뉴욕협약, 워싱턴협약, 모스크바협약과 같은 중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고려하였다. 또한 UNCITRAL 중재규칙은 현존하는 국제적 중재규칙도 고려하였는데 ECAFE 중재규칙이나 ICC 중재규칙, 미국중재협회 중재규칙, 소련상공회의소 중재규칙도 고려하였다.¹⁴⁾

따라서 국제적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절차규칙으로 UNCITRAL 중재규칙을 이용한다는 것은 UNCITRAL의 정신인 중재제도의 범세계적 통일화와 조화를 지향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활성화와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WTO 및 OECD가입에 따른 분쟁해결의 세계화와 선진화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은 1996년 오스트리아 연방상의 및 동 연방상의 국제중재센터와 중재협력의 증진을 위해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선진화는 물론 동서교역과 대 유럽 경제교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13) 러시아는 소련붕괴 이후인 1992년 과거 소련이 소유하였던 거의 모든 정치·경제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았다.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소련과 체결한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이 포함된다.

14) Peter Sanders, "Commentary on UNCITRAL Arbitration Rules" in ICCA Yearbook Vol. II(1977), pp.173-174.

된다.

2) 주요내용

이 약정 체결의 당사자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오스트리아 연방상의(Austrian Federal Economic Chamber) 및 동 연방상의 국제중재센터(International Arbitral Centre)이다. 약정의 당사자들은 협상(negotiation), 알선(mediation), 조정(conciliation), 사실조사(fact-finding), 간이심리(mini-trial), 중재(arbitration), 기타 적절한 절차에 의해 혹은 이들 분쟁 해결 수단의 결합에 의해 오스트리아 및 다른 국가에서 당사자간의 무역이나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일본이나 미국, 중국이나 러시아의 각 중재기관과 체결한 협정과는 달리 협정체결 양국의 거래 당사자만이 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국가의 거래당사자가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오스트리아와 한국 내에 ‘국제상사중재를 위한 센터’(a recognized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Austria and Korea)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협정체결의 당사자들은, ① 알선인(mediators), 조정인(conciliators), 중재인(arbitrators)의 명부(panels)를 각각 유지·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이들과 전문가를 선정하며 ②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바 여기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적 서비스, 증거기록, 번역, 문서의 보관 등을 포함한다. ③ 필요한 경우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인 선정권자(appointing authority)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협정에서 특별히 돋보이는 것은 협정체결의 당사자들간에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인 선정권자로서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제3국 중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된다.

한-오스트리아약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이 다른 외국중재기관과 중재협정을 체결하면서 중재지 결정에 있어 피신청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중재가 진행되는 방식(피신청인주의)을 도입한 형태의 중재협정과 비교가 된다. 중재기관간 피신청인주의에 입각하여 중재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기관은 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가 아닌가 한다. 동 협회는 이미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걸쳐 동구 공산권 국가의 중재기관들과 일련의 중재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전형적인 피신청인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동구권의 헝가리,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의 각 중재기관과 체결한 협정의 내용과 거의 같다.¹⁵⁾

중재지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적 관행을 보면 중재의 당사자는 모두 자국에서 자국의 중재기관에 의해 그리고 자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될 것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주의를 너무 고집하다 보면 본계약 자체의 체결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중재의 당사자는 제3국에서 중재가 진행되는 경우를 선호할 수도 있다. 특히 제3국 중재는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의 거래당사자간의 상거래분쟁의 해결을 위해 빈번하게 요청되곤 하였다. 오스트리아는 중립국으로서 국제연합의 기관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동서국간의 중재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중재협회는 1984년 9월 7일「미-헝가리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을, 1985년 10월 22일에「미-불가리아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을, 1988년 3월 15일에는「미-폴란드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을, 그리고 1989년 3월 29일에는「미-체코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을 각각 해당 국의 중재기관과 중재협정 형식으로 체결한 바 있다.

15) 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가 이들 국가의 중재기관과 협정을 체결한 시기를 보면 1957년에는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와, 1961년에는 불가리아 및 헝가리의 중재기관과 각각 체결하였다.

이상 4개의 협정 모두 미국중재협회와 해당국가의 중재기관¹⁶⁾ 및 중재인 선정권자로서의 오스트리아 연방상의간의 3자 협정(tripartite agreement)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헝가리 및 불가리아와의 협정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중재지로 고정시켜 놓은 반면¹⁷⁾ 폴란드 및 체코와의 협정에서는 중재지를 원칙적으로 비엔나로 하되 당사자합의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협정에서는 공히 UNCITRAL 중재규칙을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절차적 준거규칙으로 하였다.

헝가리 및 불가리아와의 협정은 1984-1985년간에 체결된 반면 폴란드 및 체코와의 협정이 1988-1989년에 체결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중재자를 특정장소로 정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당사자합의로 다른 장소로 변경이 가능하게 바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폴란드 및 체코와의 협정에서는 분쟁물품의 소재지, 물품검사 기타 증거제출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비엔나 이외의 지역에서도 중재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오스트리아 중재협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 선정권자로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즉, 중재원이 한-오스트리아 중재협정에 따라 단독 및 의장중재인을 선정해 주도록 요청을 받으면 중재원은 UNCITRAL 중재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를 것이다. 중재원은 중재규칙에 따른 기준의 중재인 선정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중재원은 중재인을 선정함에 있어 중재인 명부(Panel of Arbitrators)를 이용할 것이다. 동 명부에는 법조계, 실업계, 학계, 공공단체, 외국

16) 헝가리에는 헝가리상업회의소(Hungarian Chamber of Commerce), 불가리아에는 불가리아상공회의소(Bulgar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폴란드에는 폴란드 대외무역회의소(Polish Chamber of Foreign Trade) 그리고 체코에는 체코상공회의소(Czechoslovak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가 중재기관으로서의 협정체결의 당사자이다.

17) 「미-소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에서도 스웨덴의 스톡홀름을 중재지로 고정시켜 놓고 있다.

인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들이 실려있다. 따라서 중재원이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을 선정할 때에는 분쟁사건의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사건에 적합한 전문적 식견과 거래경험 및 어학력을 갖춘 자를 중재인 후보자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UNCITRAL 중재 규칙에 따라 단독 및 의장중재인을 선정할 때 중재원은 당사자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으면 당사자의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제3국인 중에서 선정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UNCITRAL 중재규칙 제7조에 의하면 3인의 중재인이 선정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만약 어느 당사자가 자기 측 중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면 타방당사자는 선정권자에게 대신중재인을 임명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선정권자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권자로서의 중재원은 중재인명부에서 중재인을 선정할 수도 있고 명부 외에서 적격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4) 협력의 방향

앞으로 대한상사중재원과 청도중재위원회는 중국(특히 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산동성 지역)과 한국과의 무역, 투자 등 상거래의 당사자들 간에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심도있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이 기존의 CIETAC과 중재지 결정을 위해 체결한 중재협정 체결은 물론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ICC 및 한-오스트리아 업무협조약정과 같이 국제화시대 기업의 분쟁해결을 제반 측면에서 촉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정 체결을 염두에 두고 접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과 청도중재위원회가 협력하여 청도 및 산동성 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기업(한국기업의 지사, 지점, 출장소, 현지법인 형태, 아니면 중국현지에서 제3국과 결합한 기업형태 등이 모두 포함될 것임)의 분쟁해결 촉진을 위해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의 분쟁해결 수단들, 즉 협상, 알선, 조정, 중재제도를 분쟁해결실무에 발전적으로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청도와 서울에 가칭 「공동중재센터」(Joint Arbitration Center)를 설치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청도간 공동중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문제는 아래의 제4장(IV)에서 필자가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 가칭 「동북아 공동중재센터」(Joint Arbitration Center for Northeast Asia)의 설립구상 및 동 기구 설립의 모델이 된 NAFTA의 CAMCA의 조직 및 운영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IV. 동북아 공동중재기구 창설의 과제-NAFTA가 주는 시사점

1. 논의의 배경

1993년 서울에서 「한·중·일 국제중재심포지움」(Symposium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이 개최된 바 있다.¹⁸⁾ 당시의 동북아 상황은 한·중 양국 수교(1992. 8) 이후 1년여가 지났고 양국간의 경제교류가 증대되는 한편으로 동북아 역내에서 발생하는 사적 분쟁해결의 중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한·중·일 3국의 ADR관련 전문가들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중국측 발표자로 참석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唐厚志 부주석은 「중국의 국제상사중재 및 조정제도」를, 일본의 松浦 聲 교수(Meijo University)는 「한국·중국·일본·의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상

18) 1993년 11월 24일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및 한국중재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움자료 참조.

위점 및 공동분쟁해결방법』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松浦 聲 교수는 동 논문에서, 앞으로 국제상사중재는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로 발전해 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중·일 3국의 상설중재기관에 대한 각별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특히 논문 말미에서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의 상설중재기관이 협동하여 역내의 사적 분쟁을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¹⁹⁾

앞으로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전망해 볼 때 역내 경제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무역, 투자 등)을 현재와 같이 쌍무적 중재협정을 통해 해당 국가간에 해결하는 방식과 병행해서 역내 국가의 중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되는 "(가칭)동북아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를 가정해 볼 때 동북아 역내 국가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친소시업을 형성하는 대규모 건설프로젝트나, 역내 국가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역외권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임을 예상하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공동기구를 설립해야 하는가? 여기서는 NAFTA하에서의 사적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분쟁해결기구인 CAMCA의 경우를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19) 관련 부분을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더욱 필요한 것은 한국·중국·일본의 상설중재기관이 상호 연대·교류를 밀접하게 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래 한국, 중국, 일본간의 국제거래분쟁은 원칙적으로 모두 3국의 어느 상설중재기관의 중재로 처리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3국의 중재기관이 기존의 분쟁을 각각 자기의 중재사건으로 하는데 애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3국의 중재기관이 공동으로 국제거래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국제중재 제도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해서, 각각 그와 같은 시각에서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요긴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재사건 수는 현재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어떻든,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중재협정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항상 중재업무상의 긴밀한 연락이나 의사소통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될 수 있는 한, 무용한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규를 정비함과 동시에, 특히 외국당사자를 배려한 실무가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 ‘주’의 자료인『한·중·일 국제중재심포지움(I)』, pp.33-34]

2. 동북아모델로서의 CAMCA

(1) CAMCA 창설배경

CAMCA(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 : 아메리카 상사중재 · 조정센터)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의거하여 창설된 사적분쟁 해결기구이다. 이 기구는 NAFTA 역내에서 발생하는 사적 상사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NAFTA 회원국인 카나다 · 미국 · 멕시코 3국의 대표적 중재기관의 공동노력이 결실을 맺어 1995년 12월에 창설되었다.

국제간의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적 분쟁의 해결촉진을 위해 저렴 ·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은 국제간의 무역, 투자 등 국제상거래의 증대와 촉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국제상거래계약의 당사자들은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에 호소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어느 당사자도 분쟁사건이 상대방 국가의 법원에서 처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ADR의 주요 수단인 중재나 조정에 의해 해결되기를 원한다.

NAFTA의 경우도 이점을 염두에 두고 역내에서 발생하는 사적분쟁을 소송이 아닌 ADR로 해결하기 위해 그 법적 근거를 NAFTA내에 두게 되었다. 이는 NAFTA 역내간 경제교류에 따른 제반 장벽이 없어지면서 물품, 서비스 및 자본거래가 급증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사적 분쟁의 해결촉진이 현안의 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2) 법적 근거

NAFTA는 역내 국가간 사적 상사거래(무역,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인 ADR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는 NAFTA 제2022조이다.

■ NAFTA 제2022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1항 : Each Party shall,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use of arbitration and other mean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between private parties in the free trade area.(각 회원국은 자유무역지대 내의 사적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중재, 기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이 이용되도록 최대한 촉진한다.)

제2항 : To this end, each Party shall provide appropriate procedures to ensure observance of agreements to arbitrate and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such disputes.(이를 위해 각 회원국은 분쟁사건에서 중재합의가 준수되도록 하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되도록 적절한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제3항 : A Party shall be deemed to be in compliance with paragraph 2 if it is a party to and is in compliance with the 1958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or the 1975 Inter-America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어느 회원국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1958)’이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협약(1975)’의 가입국으로 이를 준수하고 있다면 상기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항 : The Commission shall establish an Advisory Committee on Private Commercial Disputes comprising persons with expertise or experience in the resolu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The Committee shall report and provide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general issues referred to it by the Commission respecting

the availability, use and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and other procedures for the resolution of such disputes in the free trade area.(자유무역위원회는 사적 상사분쟁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는데, 동 자문위원회는 사적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 기타 절차의 이용가능성, 이용 및 효과에 관하여 자유무역위원회로부터 의뢰 받은 일반적 사항에 관하여 자유무역위원회에게 보고하고 권고해야 한다.)

1994년 10월 NAFTA의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는 ‘사적 상사분쟁에 관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Private Commercial Disputes)를 설립하였다. 이는 NAFTA 제2022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NAFTA 역내에서 발생하는 사적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중재, 기타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의 이용가능성, 효과 및 이를 위한 공동분쟁해결기구 설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자문위원회는 5개의 소위원회(Subcommittee)를 설치하여 활동을 해왔다. 자문위원회는 NAFTA 회원국인 캐나다·미국·멕시코 3국이 위원을 추천하여 구성한다.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6명(3국이 각 2명씩 추천)은 공무원으로 각 회원국을 대표하며 자문위원회의 공동의장(Co-chairs)으로 활동한다. 나머지 24명은 각 회원국이 8명씩 추천한 인사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위원회의 회의는 각 회원국 주관으로, 각 회원국이 추천한 공동의장의 사회로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합의제(by consensus)로 운영한다.

(3) 조직 및 운영

CAMCA 창설의 법적 근거는 제공되었지만 그 창설을 누가 맡아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NAFTA 회원국들은 그 창설의 주역을 역내 회원국의 대표적 중재기관으로 하고 이들 기관이 공동으로

CAMCA를 창설하도록 하였다.

CAMCA 창설을 주도한 역내의 중재기관은 미국의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미국중재협회),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British Columbia 국제상사중재센터) 및 Quebec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魁벡상사중재센터), 멕시코의 Mexico City National Chamber of Commerce(멕시코시상업회의소)의 4개 중재기관이다.

CAMCA의 이사회(Governing Council)는 12명으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이 4명을 추천하는데 추천시 추천국가 해당 중재기관의 책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CAMCA 운영과 관련하여 제반 규칙, 요금 및 절차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다. CAMCA는 또한 국제무역과 분쟁처리에 관한 국제적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되는 ‘조정인 및 중재인명부’(Panel of Arbitrators and Mediators)를 유지·관리한다. 동 명부에는 각 회원국이 12인씩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CAMCA는 NAFTA 역내의 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창설된 다국적 성격을 가진 상설기관으로 통일된 규칙과 정책 및 행정절차를 가지고 운영된다. 역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은 CAMCA 창설을 주도한 상기 중재기관의 어느 사무소에서도 접수될 수 있다.

(4) CAMCA의 규칙과 분쟁해결조항

CAMCA의 분쟁처리 주요업무는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이다. ‘조정’은 구속력이 없는 절차로서 당사자간의 분쟁을 공정한 제3자인 조정인이 개입하여 당사자가 분쟁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반면, ‘중재’는 분쟁의 최종해결을 위한 절차로 당사자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구속력을 가진 절차이다.

역내간 경제활동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그 해결을 위해 먼저 조정을 시도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 그 대상은 투자

및 무역, 건설, 고용, 금융, 프랜차이징, 지적재산권, 제조, 오일 및 가스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이다.

CAMCA의 조정규칙은 당사자가 동 규칙에 따라 조정을 받겠다는 합의를 하면 적용된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절차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재규칙도 조정규칙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CAMCA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를 하면 적용된다. 중재규칙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일부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CAMCA의 중재규칙이 중재에 적용되는 법률의 강행규정과 충돌하게 되면 동 강행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이는 NAFTA 회원국의 중재법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장래분쟁의 해결을 담보하기 위해 CAMCA가 권고하는 조정조항과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할 수 있다. 만약 계약서에 이들 조항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당사자는 동 현존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CAMCA가 권고하는 부탁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조정이나 중재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CAMCA에서는 장래분쟁은 물론 현존분쟁의 해결을 위해 조정조항 · 중재조항 · 조정부탁합의서 · 중재부탁합의서 등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쟁해결조항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를 조항중 조정과 중재조항이 연계된 분쟁해결조항이 많이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²⁰⁾

중재조항에 추가가 가능한 사항으로는, ① 중재인의 수(1인 혹은 3

20) 조정과 중재가 연계된 분쟁해결조항 : The parties agree that they will endeavor to settle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which they are unable to settle through direct discussions, by mediation administered by the 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 under its rules before resorting to arbitration. Thereafter,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administered by the 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and judgment on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may be entered in any court having jurisdiction thereof. The requirement of filing a notice of claim with respect to the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submitted to mediation shall be suspended until the conclusion of the mediation process.

인) ② 중재지(도시/국가) ③ 분쟁사건에 적용될 실체법(준거법) ④ 언어 등이다.

3. 동북아 공동중재기구 설립시의 검토사항

(1) 중재판정의 집행문제

동북아 역내의 한·중·일 3국에 의한 공동중재기구 창설을 논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하는 국제협약에의 가입여부이다. 왜냐하면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판정에서 패한 당사자가 자진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집행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일 3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으로 불리는 뉴욕협약에 모두 가입하였으므로 기본적 법적 환경은 충족된 상태다. 일본은 1961년에, 한국은 1973년에, 그리고 중국은 1987년에 각각 뉴욕협약에 가입하였다. 뉴욕협약에 가입하면서 일본은 상호주의 유보선언을 하였으며 우리 나라와 중국은 상호주의 유보선언과 상사행정 유보선언을 하였다.²¹⁾

앞으로 창설될 (가칭)동북아 공동중재센터는 CAMCA와 같이 동북아 역내의 분쟁사건은 한·중·일 3국의 어느 중재기관에도 접수될 수 있으며 3국이 공동으로 제정한 조정 및 중재규칙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한·중·일 3국이 비록 상호주의 유보선언을 하였다고 해도 중재합의나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조정이나 중재사건은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중·일 3국의 영

21) 뉴욕협약 제1조 제3항 전단은, “어떠한 국가든지 상호주의의 기초하에서 다른 체약 국의 영토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상호주의 유보선언’(reciprocity reservation)이라고 한다. 또한 뉴욕협약 제1조 제3항 후단은, “유보선언을 한 국가의 국내법상 상사(commercial)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로 인한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상사행정 유보선언’(commercial reservation)이라고 한다.

역내에서(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중·일 3국의 어느 중재기관에) 접수되어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호주의 유보선언의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뉴욕협약 채택시 상사한정 유보선언이 허용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뉴욕협약의 전신에 해당하는 제네바의정서 제1조 제2항에 유사한 규정이 있었고 일부 대륙법계 국가의 중재법에서 상사적 법률관계와 비상사적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전자에 한하여 뉴욕협약을 적용하겠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상사한정 유보선언을 허용한 것으로 보여진다.²²⁾ 뉴욕협약에서는 상사한정 유보선언에 따라 ‘상사적 법률관계’의 범위를 체약국의 국내법에 맡겨 놓음으로써, 어느 나라에서 商事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가 다른 나라에서는 상사라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중·일 3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나라들이 ‘商事’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역내분쟁의 해결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²³⁾

(2) 설립을 위한 입법방향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CAMCA 창설의 법적 근거는 NAFTA 제2022조이다. (가칭)동북아조정·중재센터 창설의 법적 근거는 어떠한가? 필자의 기본적 구상은 NAFTA의 경우처럼 한·중·일 3국간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면 동 협정에 NAFTA 제2022조와 유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FTA 체결문제는 3국간에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현재 연구중에 있어 체결여부를 속단할 수 없고 체결시한을 설정할 수 도 없다.

그렇다면 한·중·일 3국간의 FTA가 체결될 때까지 (가칭)동북아 공동중재센터의 설립문제도 보류해야 할 것인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동북아 역내 3국간의 무역·투자 등 사적분쟁

22)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0, pp.253-254.

23) NAFTA 회원국의 경우를 보면 캐나다(1986)와 미국(1970)은 상호주의 유보선언과 상사한정 유보선언을 하였고 멕시코(1971)는 아무런 유보선언도 하지 않았다.

의 해결촉진을 위해서 3국이, 특히 3국의 중재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인바 이는 FTA체결과 같이 정치적·경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아니다. 때문에 이미 10여년 전에 산학협력 차원에서 「한·중·일 국제중재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 한·중·일 3국의 중재기관이 협동하여 동북아 역내의 사적분쟁을 ADR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던 것이다.

필자는 한·중·일 3국의 FTA체결 이전이라도 동북아분쟁해결기구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모델은 2003년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즈음하여 한·중 양국간에 서명된 ‘사법공조조약’이다.²⁴⁾ 이 조약의 체결은 한국과 인적·물적 교류가 많기 때문에 양국간 민사 및 상사사건에 있어서 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상사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에 기여하는데 있다.

사법공조조약에서 ‘商事’ 부분을 보면은 “당사국은 뉴욕협약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영역안에 내려진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한다.”라는 문언이다. 이는 한·중 양국이 뉴욕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양국간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적분쟁의 해결수단으로 ADR제도의 최종 수단인 상사중재제도를 양국이 승인할 뿐만 아니라 중재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보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동북아 공동중재기구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해 한·중·일 3국간의 ‘상사사법공조조약’의 체결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중·일 FTA체결 전이라도 동북아분쟁해결기구의 설립을 위해 CAMCA창설의 법적 근거인 NAFTA 제2022조의 취지를 동 조약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중·일 3국의 중재기관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중재협정의 정신에 따라 동북아 공동기구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행을 위한 연구에 착수할 것과 각국의 책임 있는 당국에 정책적 건의를 해야한다.

24) 정식 명칭은 「한·중국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이며 2003년 7월 7일 북경에서 우리 나라의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과 리짜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관간에 서명되었다.

V. 결 어

국제간의 경제교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소송으로 해결하지 않고 알선, 조정, 중재 등 소송을 대체하는 ADR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국제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ADR제도의 최종해결수단인 상사중재의 국제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설중재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임시적 중재(ad hoc arbitration)보다는 제도적 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의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중재기관 상호간의 분쟁해결 촉진을 위한 노력은 중재협정을 통해 나타난다. 앞으로 청도중재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중국(특히 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산동성 지역)과 한국간의 무역, 투자 등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청도중재위원회는 분쟁당사자들의 중재지(place of arbitration)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재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양 기관이 ADR제도의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을 통해 한-중 거래당사자의 분쟁해결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중재관련 시설의 제공, 통번역 등 절차진행을 위한 행정적 서비스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협력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중 양국의 중재기관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권형성에 대비한 분쟁해결협력도 이제부터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동북아 경제권이 FTA로 결속되는 경우 동북아 공동중재센터의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는 CAMCA의 경우와 같이 동북아 FTA속에 근거규정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FTA체결 이전이라도 한중일 3국이 사법공조조약을 통해 한-중을 포함한 동북아 역내권의 사적 상사분쟁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

하여 공동분쟁해결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0.
- 장문철 · 정선주 · 강병근 · 서정일, UNCITRAL모델중재법의 수용론, 세창출판사, 1999.
- 김창남,「한일 FTA 구상과 한일해협경제권」,『우리나라의 FTA 정책과 부산지역경제』(부산외대 국제통상연구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자료, 2002. 12. 6, 부산).
- 문형근,「NAFTA 상사중재 및 조정기구에 관한 고찰」, 대한상사중재원『중재』 제299호(2001 · 봄).
- 唐厚志,「중국의 국제상사중재 및 조정제도」,『한 · 중 · 일 국제중재심포지움(II)』(대한상사중재원 주최 심포지움 자료, 1993. 11. 24, 서울).
- 松浦 聲,「한국 · 중국 · 일본의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상위점 및 공동분쟁 해결방법」,『한 · 중 · 일 국제중재심포지움(I)』(대한상사중재원 주최 심포지움 자료, 1993. 11. 24, 서울).
- 青山善充,「입법과정중인 일본중재법에 대해서」,『한 · 일 중재제도의 현안과 과제』(한국중재학회 · 대한상사중재원 주최 심포지움 자료, 2002. 9. 28, 서울). 대한상사중재원, 상사분쟁과 중재절차, 2001.
- 중재관련 국내외 법규 및 조약 :
- UNCITRAL 중재규칙(1976)
 - UNCITRAL 모델중재법(1985)
 - 한-소 무역협정(1990) 및 투자보장협정(1991)
 - 한-중 무역협정(1990) 및 투자보장협정(1990)
 - 미-중 무역협정(1979)

- 뉴욕협약(1958)
- ICSID협약(1965)

대한상사중재원 체결 중재협정 및 업무협조약정 :

- 한-일 중재협정(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1973)
- 한-미 중재협정(미국중재협회)(1974)
- 한-ICC 업무협조약정(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1978)
- 한-쿠알라룸푸르 업무협조약정(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1982)
- 한-카이로 업무협조약정(카이로지역 국제상사중재센터)(1989)
- 한-오스트리아업무협조약정(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 국제중재센터)(1996)

Arbitration Agreements entered into by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with the arbitral institutions in socialist states, including USSR(1977), Hungary(1984), Bulgaria(1985), Poland(1988) and Czechoslovakia(1989).

Arbitration Agreements entered into by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with the arbitral institutions in socialist states, including Poland(1957), Czechoslovakia(1957), Rumania(1957), Bulgaria(1961), and Hungary(1961).

Piter Sanders, "Commentary on UNCITRAL Arbitration Rules" in ICCA Yearbook Vol. II(1977), pp.173-174.

Wolfgang Peter, *Arbitration and Renegoti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The Hague : Kluwer Law International, 1995.

ABSTRACT

Cooperation for Development of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Arbitral Institutions

Sang-Ho Kim

It is well recognized that the availability of prompt, effective and economical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orderly growth and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Increasingly,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cluding arbitration and mediation, instead of litigation in national courts, has become the preferred means of resolving privat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Under the situation, efforts for settlement of trade and investment disputes by ADR have been made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and arbitration agreement.

Judging from the importance of economic exchange between Korea and Qingdao including Shandong Province,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and The Qingdao Arbitration Commission(QAC) should strengthen mutual cooperation to develop efficient methods of resolving commercial disputes aris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o assist parties in solving those disputes through conclusion of arbitral agreement.

Recently, efforts for conclusion of a Korea-China-Japan Free Trade Agreement(FTA) received strong support at Korea-Japan and Korea-China Summit Meeting held on June and July, 2003 respectively. If the conclusion of FTA among the three countries would be realized, it would promote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contributing to economic growth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Under the circumstances, the key arbitral institutions including KCAB and QAC should consider to take the initiative in setting up tentatively called 「Joint Arbitration Center for Northeast Asia」 for which the CAMCA of NAFTA will be the good example.

Key Words : mutual cooperation for dispute settlement, ADR system including arbitration and mediation, Korea and China arbitral institutions